

교원 업적평가 개선 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개선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법무실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(이상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,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 5. 1)

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(단, 보직교수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).
- ⑤ 필요시 계열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이 된다.

제3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회의)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교원 업적평가에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

제6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